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8일,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원택 의원)

현행법은 토종가축을 한우·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 및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인정 및 취소 등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와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의2 신설, 제50조 등).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첫째, “토종가축 인정제도”는 ①한우, ②돼지, ③닭, ④오리, ⑤말 및

⑥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¹⁾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음.

토종가축에 대하여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²⁾(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48호) 제5조에 따른 인정기관이 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축 사육 농가가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음.

현행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서는 “토종가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실시 근거 및 인정기준·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고시)을 살펴보면,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으로 하여금 인정받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³⁾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1)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인정기관) ① 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토종돼지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2. 토종닭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3. 토종오리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4. 토종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5. 토종벌 :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② 토종가축의 인정기관은 인정대상 토종가축별로 1개의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다만, 관련이 있는 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

3)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인정 농장 및 축산물의 표시) ①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정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②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인정표시 및 세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등 인정 취소 사유 발생 시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따라서,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의 경우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 취소의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점을 고려할 때,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실시 근거 및 인정취소 사유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인정 기준·절차 등에 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거 규정에 따라 검정·인정기관 지정 또는 토종가축 인정을 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인정기관 지정 또는 토종가축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각각의 경과조치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제도는 검정을 통해 우수 종축을 선발하고,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우수하고 품질 좋은 정

4)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인정의 취소 등) ①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인정기관은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당초 인정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확인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에 따른 보고 또는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해당 인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액등을 농가에 보급하여 가축을 개량하려는 목적으로 현행법⁵⁾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종축⁶⁾업체(종돈·종계), 정액등처리업체⁷⁾(소·돼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과 관련하여 연도별 신규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의 경우 최근 7년간('17~'23) 소에 대하여는 단 한건의 인증도 없는 실정이고, 돼지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연평균 1.1건에 불과함.

5) 「축산법」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국립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허가증 사본 또는 종축업허가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

③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④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7)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또한, 우수 종축업체 인증도 최근 7년간('17~'23) 동 인증을 취득한 '종계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종돈장' 역시 인증 취득 건수가 연평균 1.1건에 불과하여 동 인증제도의 수요 및 실효성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1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① 동 인증제도의 수요 및 실효성이 극히 저조하여 이미 사문화된 제도인 점, ② 우수 종축 선발에 따른 가축의 개량이라는 동 인증제도의 목적은 가축검정제도 및 정액 품질확인⁸⁾을 통해 대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향후 관리 수준이 높고 개량 노력이 인정되는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라는 점,

④ '22년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적합성 평가제도 실효성 종합검토서」⁹⁾ 및 '24년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규제혁신추진단(국무조정실)이 상정한 「인증규제 정비방안」¹⁰⁾에서도 동 인증제도에 대하여 인증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폐지를 의결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동 인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임.

8) 정액등처리업체는 6개월마다 보유 종축에 대해 질병(결핵, 브루셀라 등 전염성질환, 구개열 등 유전성 질환) 검사 및 정액의 품질(생존율, 기형률, 유효정자수 등) 검사를 하여야함(축산법 시행규칙 별표3의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9) 적합성평가제도가 부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필요성·적절성·완성도 측면에서 분석·검토하는 것(「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0) 257개 인증규제를 검토하여 폐지 24, 통합 8, 개선 66 등 정비방안을 제시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